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인권보호관 조홍용
전화 062-231-4332/팩스 062-231-4951

보도자료

2024. 2. 14.(수)

수사 무마 및 경찰 인사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사건 중간수사결과

- 총 18명 기소, 10명 구속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광주지역 브로커 A의 수사 무마 및 경찰 인사 개입에 대해 수사한 결과,**
 - ① 수사 관계자들을 통한 사건 무마 명목으로 가상 화폐 관련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약 18억 원을 수수한 **브로커 2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 ② 수사 중인 사건 해결 및 수사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직 경찰관 1명, 현직 검찰 수사관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현직 감경 수사관 3명**을 불구속 기소 하였으며,
 - ③ 경찰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현직 경찰관 6명(구속 3명, 불구속 3명)**, 뇌물 전달 과정에 참여한 **전직 경찰관 3명, 사업가 1명, 브로커 1명(구속 3명, 불구속 2명)**, 뇌물을 수수한 **현직 치안감 1명(불구속 1명)** 등 총 12명을 기소하였음
- **향후에도 검찰은 브로커 A와 관련된 남은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임**

I

피고인 및 주요 공소사실 요지

연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처분 결과
1	A (60세, 브로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8. 20. ~ '21. 8. 25.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甲 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약 18억 원 수수[변호사법위반] ※ A와 공동으로 2억 3,000만 원, A 단독으로 15억 3,900만 원 수수 - '21. 1. G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J로부터 3,000만 원, O로부터 2,000만 원 수수[제3자뇌물취득] - '22. 1. Q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R로부터 1,000만 원 수수[제3자뇌물취득] - '20. 11. ~ 12. B에게 甲에 관한 사건의 구속 수사를 막아주고, 사건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등 수사 관련 편의제공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64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뇌물공여] 	구속 구공판 ('23. 8. 22.)
2	A' (63세, 브로커)	<p>'20. 8. 20. ~ '21. 3. 30.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甲 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약 3억 1,550만 원 수수</p> <p>※ A와 공동으로 2억 3,000만 원, A' 단독으로 8,550만 원 수수</p>	구속 구공판 ('23. 8. 22.)
3	B (59세, 現경정)	'20. 11. ~ 12. A로부터 당시 광주○○서에서 수사 중인 甲에 관한 사건의 구속 수사를 막아주고, 사건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등 수사 관련 편의제공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64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수수[뇌물수수]	불구속 구공판 ('24. 2. 14.)
4	C (55세, 現검찰 수사관)	'20. 12. 4. ~ 21. 3. A로부터 甲의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 제공, 수사 무마 청탁 및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 취급 대가 등 명목으로 합계 1,301만 원의 금품 등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직자로서 제한금품 이상 금품 수수[변호사법위반 및 청탁금지법위반]	구속 구공판 ('23. 11. 3.)
5	D (48세, 現검찰 수사관)	'20. 11. ~ '21. 4. A로부터 甲에 대한 사기 사건 수사 정보 제공 등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한 C에게 위 사기 사건의 수사 정보를 누설[공무상비밀누설]	불구속 구공판 ('24. 1. 24.)

연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처분 결과
6	E (59세, 前경무관)	'22. 9. 28. ○○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甲의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A로부터 8,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3. 6. 26. ~ 27. 그 일부인 4,000만 원을 수수[변호사법위반]	구속 구공판 ('23. 11. 28.)
7	F (51세, 現경감)	'22. 9. ~ '23. 1. ○○청에서 수사 중이던 甲의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관한 수사정보를 유출[공무상비밀누설]	불구속 구공판 ('24. 2. 14.)
8	H (65세, 前경감)	'21. 1. G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L로부터 K 승진 관련 2,000만 원, N으로부터 I 승진 관련 3,000만 원, A로부터 J, O 승진 관련 5,000만 원, P로부터 자신의 승진 관련 1,500만 원 수수[제3자뇌물취득]	구속 구공판 ('23. 11. 23.) 병합 불구속 구공판 ('24. 1. 26.)
9	I (55세, 現경정)	'21. 1. G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M에게 3,000만원 교부[제3자뇌물교부]	구속 구공판 ('24. 1. 9.)
10	J (55세, 現경정)	'21. 1. G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A에게 3,000만원 교부[제3자뇌물교부]	구속 구공판 ('24. 1. 26.)
11	K (55세, 現경감)	'21. 1. G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L에게 2,000만원 교부[제3자뇌물교부]	구속 구공판 ('24. 1. 26.)
12	L (64세, 前경감)	'21. 1. G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K로부터 2,000만원 수수[제3자뇌물취득]	구속 구공판 ('23. 12. 29.)
13	M (52세, 前경정)	'21. 1. G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I로부터 3,000만원 수수[제3자뇌물취득]	구속 구공판 ('24. 1. 9.)

연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처분 결과
14	N (48세, 사업가)	'21. 1. G에게 I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M으로부터 3,000만원 수수[제3자뇌물취득]	불구속 구공판 (‘24. 1. 9.)
15	O (50세, 現경감)	'21. 1. G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A에게 2,000만원 교부[제3자뇌물교부]	불구속 구공판 (‘24. 1. 26.)
16	P (53세, 現경감)	'21. 1. G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H에게 1,500만원 교부[제3자뇌물교부]	불구속 구공판 (‘24. 1. 26.)
17	Q (58세, 現치안감)	'22. 2. A로부터 R의 승진을 부탁받고 1,000만원 수수[뇌물수수]	불구속 구공판 (‘24. 2. 14.)
18	R (55세, 現경감)	'22. 1. Q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A에게 1,000만원 교부[제3자뇌물교부]	불구속 구공판 (‘24. 2. 14.)

II 주요 수사경과

- '23. 8. 22. 브로커 A 등 2명 구속 기소
- '23. 10.~'24. 1. 서울경찰청, 전남경찰청, 광주경찰청, 관련자들 사무실 및 주거지 등 압수수색
- '23. 11.~'24. 1. 전직 경무관 등 12명 추가 기소(8명 구속)
- '24. 2. 14. 현직 치안감 등 4명 추가 기소

※ 총 10명 구속 기소, 8명 불구속 기소



수사 결과 및 의의

▣ 브로커와 검경 공무원들 간의 검은 커넥션을 통한 부패범죄 규명

- 광주·전남 지역의 브로커로 활약하던 A는 평소 수 십여 명의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거나 향응과 용돈을 제공하면서 친분을 형성·유지하였음
- 이에 현직 총경들이나 치안감조차도 A를 ‘형님’으로 호칭하였고, A는 이를 이용하여 광주·전남 지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 이런 상황에서 피해액 수십억 원의 가상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甲은 A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A에게 약 18억 원을 교부하였던 것임
- 검찰은, 브로커 A가 甲에 대한 사건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 전직 경무관인 E 및 현직 검찰 수사관 C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구속 기소한 것을 포함해, 현직 검찰 수사관 2명, 전·현직 경찰관 3명을 기소하였음
- 구체적으로 광주 ○○서에서 수사하던 甲의 2억 8,000만 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현직 경찰관인 B가 A에게 실시간으로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64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
 - 또한, 甲의 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 C가 A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301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음
 - 이때, 검찰 수사관 C는 위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실 수사관 D로부터 압수·수색 정보 등을 제공받아, A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음

- 뿐만 아니라, A는 甲이 ○○경찰청에서 수사를 받던 11억 8,000만 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전직 경무관 E에게 4,000만 원을 제공하고, E의 지인인 담당 경찰관 F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

▣ 경찰 공무원들의 인사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

- 전체 승진의 50%에 달하는 심사승진의 경우, 승진 배수(5배수) 안에만 들면 주관적인 '적성 점수'에 의해 승진이 좌우되어, 사실상 인사권자인 지방경찰청장의 영향력이 막대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인사철만 되면 인사권자와의 친분을 통해 심사 승진 제도를 악용하려는 승진 브로커들이 경찰 인사에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이 오고 간다는 소문이 무성하였음
- 검찰은 브로커 A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찰 공무원 인사 비리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여, 인사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현직 경찰관 3명과 브로커 3명을 구속 기소한 것을 포함해 인사 비위 관여자 총 12명을 기소하였음
- 구체적으로, 2021~2022년 광주·전남경찰청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던 일부 경찰 공무원들이 인사권자와 친분이 있던 A 등 브로커들을 통해, 경감 승진의 경우 1~2,000만 원, 경정 승진의 경우 2~3,000만 원의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뿐만 아니라, 뇌물이 전달된 일부 승진대상자들의 경우, 승진 심사 과정에서 기존 순위가 뒤바뀌어 승진한 사실까지 확인되어,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매관매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음

IV

향후 계획

- 검찰은 기소된 범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 향후 검찰은 수사 청탁 및 인사 비리 외에도 브로커 A와 관련되어 제기된 기타 의혹들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임 ☑